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1-6
----------	--------

제출연월일: 2021년 3월 일

제출자: 강서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안 제2조)
- 나.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구의원 1인 포함)으로 구성한다. (안 제3조)
- 다. 용도를 지정한 자발적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안 제6조제1항)
- 라. 구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구가 관여하는 축제추진위원회 또는 구와 민간 기업이 공동 주최·주관하는 행사, 구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장학재단의 장학 기부금 모금 시 사전 검토서를 위원회 심의 시 첨부하여야 한다. (안 제6조제3항)
- 마. 출석회의가 원칙이나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안 제7조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0. 10. 28 ~ 11. 17.) 결과: 의견 없음
- 2) 규제 사전심사 결과: 해당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4)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을 포함한 4명 이내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전문직 종사자,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 기업인, 일반시민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전체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①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기탁하려는 자는 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기탁서를 구청장 또는 구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품을 기탁 받아 사용하려는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부금품 사용 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요구) ① 구청장 또는 구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대표자는 용도를 지정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품을 기탁 받을 부서는 용도를 지정한 기탁금품 접수 여부에 대한 심의 요구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안건별로 하며 제5조의 지정기탁서와 기부금품 사용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접수 관련 고려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검토서를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시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조 각 호의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구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구가 관여하는 축제 추진위원회 또는 구와 민간 기업이 공동 주최·주관하는 행사

2. 구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장학재단의 장학 기부금 모금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운영, 회의록, 위원의 해촉 사유, 제척·기피·회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 심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결과 통보) 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부금품 사용 계획서

1. 접수기관(부서)
2. 접수금품
 - 기탁금액 : 원
 - 기탁물품 : 점(명세:별첨)
3. 사용하려는 이유 :
4. 사용하려는 방법 :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5. 사용일시와 장소 :

위와 같이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작성 자 직급 : 성명 : (인)

 확인 자 직급 : 성명 :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2호서식]

심 의 요 구 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 사안의 심의를 요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번호	기 탁 자		기 탁 내 용		
	성 명	주 소	접수부서	금 품	목 적

년 월 일

강 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사 전 검 토 서

1. 기탁내역

안 건 번 호			접 수 부 서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연 락 처		주 소	
기 탁 내 용	기탁금품액		기 탁 방 법	
	목 적			

2. 검토사항

- 가. 행정 목적상 직접 필요성
- 나. 협찬 경위
- 다. 직무관련성 여부

3. 검토결과

- 가. 접수부서
- 나.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

심 의 의 결 서

귀 부서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년 ○○월 ○○일 심의 요구한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함.

1. 심의안건

가. 안전번호

나. 기 탁 자

- 성 명 :

- 주 소 :

다. 기탁일자 :

라. 기탁금품

- 기탁금액 : 금○○원 (금○○원)

- 기탁물품 : 점 (명세별첨)

마. 목적 및 용도 :

3. 참석위원 : 총 ○○명 중 ○○명

4. 심의결과

가. 의결사항 : 원안가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

나. 수정의결(부결, 심의보류) 사유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장

기탁금품접수 심의 결과

귀 부서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년 ○○월 ○○일 심의 요구한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기에 그 결과를 같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통보합니다.

1. 일 시 :
2. 방 법 : 출석심의, 서면심의
3. 장 소 :
※ 참석위원 : 총 ○○명 중 ○○명
4. 안 건 :
5. 결 과 :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장

강 서 구 청 장 귀하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의안의 내용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로 비용추계서 작성은 생략함

4. 작 성 자

-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담당자 : 행정8급 조은솔 2600-6042)

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2조, 제3조)
- 용도를 지정한 자발적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에 심의 요구 절차 규정(안 제6조제1항)
- 위원회는 구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구가 관여하는 축제 추진위원회 또는 구와 민간 기업이 공동 주최·주관하는 행사, 구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장학재단의 장학 기부금 모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 시 사전검토서를 첨부하도록 규정 (안 제6조제3항)
- 출석회의 원칙 및 서면 심의할 수 있는 경우 규정 (안 제7조제2항)

□ 검토의견

- 동 제정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에 규정하는 내용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평가번호	2020 - 48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직급	행정7급	성명	김태환
입안주무부서	자치행정과	통보(조치)일		2020. 11. 17.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조례안 전부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0A서울강서047		
정책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서명	자치행정과	
	담당자명	조은솔	전화번호 02-2600-604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0년 11월 9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강서구생활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최은영/02-2600-6762)

자치행정과장 귀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치자금법」
2. 「결핵예방법」
3. 「보훈기금법」
4. 「문화예술진흥법」
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7. 「재해구호법」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9.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경우 시·도지사, 시·군·자치구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도의 경우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시·군·자치구의 경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⑥ 시·도 및 시·군·자치구 기부심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